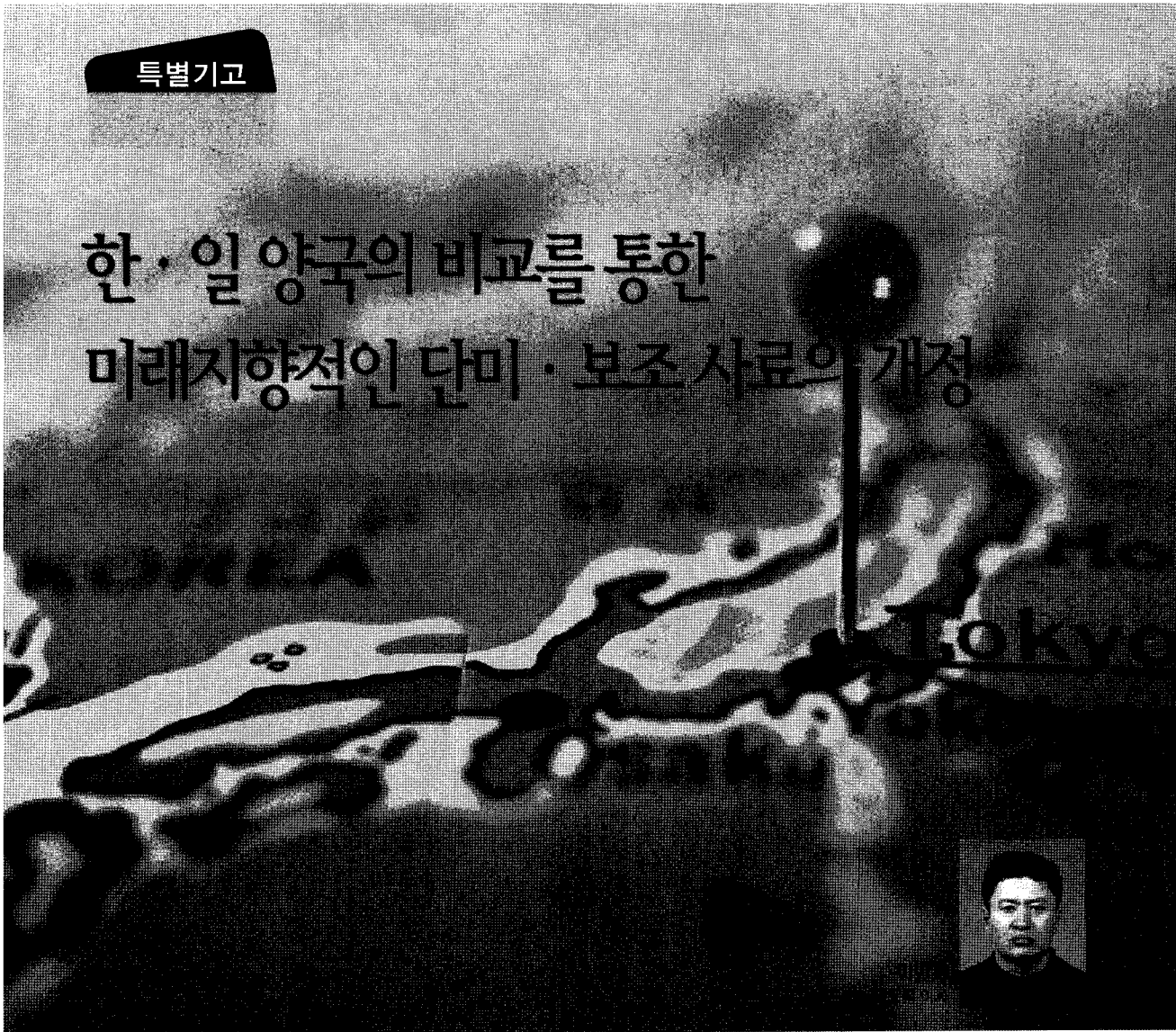


한·일 양국의 비교를 통한 미래지향적인 단미·보조사료의 개정



국내 사정상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학문분야를 비롯한 법제, 제도 면에서 일본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일본 축산의 성장과 제도를 고찰해 보면 우리나라의 향후 나아갈 방향과 대책의 수립이 수월하게 연상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따라, 현재도 국내의 축산관련업계의 지도층과 연구 및 행정직에 종사하는 일부 인사들은 우리나라의 실정에서는 EU나 미국의 제도보다도 일본의 관료주의적인 제도나 법이 더 부합된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를 실행에 옮기고자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로서 미국의 시장경제주의식 사고방식을 더 선호하는 축산관련업계에 종사하는 젊은 세대들의 사고방식과의 미래지향적인 이견해소를 위한 중재절차를 필요로 하고 있다.

현 재, 국내 사료공장의 다수는 비록 일부 사료공장이 일본의 사료공장과 기술제휴를 맺고 있기는 하지만 EU나 미국의 상위권 사료공장에서부터 기술제휴를 통해 배합사료제조기술을 축적하고 있고, 국내 선두권 사료공장은 이 축적된 기술을 활용하여 중국과 동남아국가로 배합사료 기술수출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사료관리 법은 관료주의적인 색채가 강한 일본의 사료안전 법을 비롯한 관련법규에다 식품공전을 비롯한 국내의 일부 법을 가미한 제도를 근간으로 하면서 일본과 EU에서도 채택하고 있지 않은 처벌 강화수위 만을 더 높은 사료관리 법을 유지하고 있어 시장경제주의 원칙이 강력히 보완된 미래지향적인 법의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축산수준과는 아직도 일정한 격차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일본의 사료안전 법에 수록된 단미, 보조사료를 비롯한 사료첨가물에 대한 법규정이 일본의 내부 사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비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채택해도 무리가 없을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불필요한 이의를 제기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일본 사료안전법의 단미, 보조사료 부분에서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국수주의가 강하게 가미된 일본의 법규는 구미각국으로부터의 수입개방 압력에 교묘히 대응하면서 자국의 축산관련 농가와 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법규를 제정한 배경이나, 국내에서는 사료관리법 개정에 참여했던 인사들이 이를 간과하는 경우가 있다.

이미 본인이 수차례에 걸쳐서 그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는 생균제 관련규정도 그 대표적인 경우의 하나이고, 효능이나 가격 면에서 일본의 메이지사에서 개발된 데스토마이신A에 비해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해 국?내외에서 양돈용 내부구충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펜벤다졸(Fenbendazole)도 일본에서는 자국의 동물약품 보호를 위해 사료공장에서 승인을 허락하고 있지 않을 정도로 보호주의를 고수하고 있다.

일본, 대만을 비롯한 아시아 주변국가와 우리나라의 주요 관련법규 개정에 대한 차이는 아시아 주변 국가는 전문가 집단의 정밀 검토와 관련업계 여론수렴을 통한 법규의 확정을 통해서 단계적인 시행을 하는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장기간에 걸친 검토와 여론수렴 과정을 제대로 거쳐서 법규를 제정하는 것을 선호하기 보다는 아직도 일부 인사들이 군사정권시절의 잔재인 권위주의의 향수를 선호함으로 인해 주로 일본의 사료안전 법 법규를 근간으로 해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법규의 확정과 시행을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추가적으로 해당 관련협회의 청원을 반영시켜주는 식의 행정을 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인상을 주는 경우가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단미, 보조사료의 개정은 물론이고 2005년 5월부터 시행되는 25종의 항균성물질 감축과정도 마찬가지이다. 일본 농림수산성이 대원칙만 확정해 놓고, 식품안전위원회를 통해 수년간에 걸쳐서 전문가집단의 전문적인 검토를 한 뒤에 회의결과를 공개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공표하면서 국익을 고려하여 최종 확정안의 발표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은 국내에도

시사 하는 봐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미국(1999, 2000)과 EU(1993) 및 일본(2004)에서 이미 발표한 항균성 사료첨가제(AGPs)의 사용 중지로 인한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문가집단의 실제 조사를 통한 평가도 없는 것은 물론, 덴마크를 비롯한 EU의 와전된 정보를 시정하지도 못하고 일본과 숫자만 25종으로 같게 해서 법의 시행에 들어감으로써 국익을 고려하여 정책의 방향을 급선회한 일본과는 행정상의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5월호에 이어서 사료관리법 단미, 보조사료의 일부 성분의 예를 들어 본 주제와 관련된 본인의 의견을 과학적인 근거를 들어 제시하고자 한다.

효모배양물(YC)과 활성건조효모의 세분화에 대한 과학적 근거

현재 일본의 사료안전 법에서는 효모제는 비록 국내원료가 일본에서 사양시험까지 거쳐 필드용으로 수출까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료공장에서 사료첨가물로 사용하도록 허용되고 있지 않아 법 규정이 없으나, 우리나라에서는 DFM시장의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국내 사료관리 법에서는 효모제를 국내사정과 업체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서 일부 비전문가들이 전문가의 지적과 과학적 근거를 외면한 채 효모배양물(Yeast Culture)과 활성건조효모(Active dry yeast)를 구분 없이 추가 수록함으로써 여러 측면에서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미국의 AAFCO(2004)에서는 현재 국내에서 벌어지는 현상과 유사한 현상이 벌어지는 초창기에 일어난 많은 혼란사태를 정리한 뒤에 80년대 후반부터 효모제를 활성건조효모와 효모배양물로 분명히 구분하여 수록함으로써 효모배양물은 부형제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제품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를 모두 효모제로 처리하면서 2가지로 세분화하는 것에 효모배양물을 제조할만한 기술력과 제조시설을 구비하지 못한 업체들의 다수가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는 후진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국내 사료관리법에 부형물질로 사용이 승인된 성분도 효모배양물이 국내에 처음 소개되어 허가되는 과정과 과학적 근거 및 현장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일부 인사들이 근거 자료에만 의존하여 법을 제정하다 보니 문제점이 시정되는 것이 아니라 관행만 되풀이 되고 있다.

이 부형물질의 지정이 흔히 업계에서 제품제조시에 통용되는 순수한 부형제의 성분이 아니라 이전에 동물약품으로 관리되면서 효모배양물에 대한 개념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던 시절에 당시 국내 최초로 미국의 원조 효모배양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던 회사가 담당 수의공무원에게 허가 양식의 미비라는 이유로 동물약품 허가양식을 준수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아 배지성분으로 사용되던 성분을 부형제로 표기하여 허가서류 심사용으로 제출하여 허가받은 잘못된 관행이 현재의 사료관리 법에도 반영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인은 사료안전 법을 시행하고 있는 일본 비사료검사소의 담당자로부터 일본의 사료안전 법에 규정된 법규에 대해서 어떠한 과학적 근거로 제정된 것인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직접 듣기 위해 도쿄도(東京都) 신주꾸(新宿)시에서 일본어 통역의 도움을 받아 전화와 fax를 통해 본인의 사전예상과 일치하는 만족스러운 답변을 얻을 수 있었다.

상기의 문&답에서 본좌와 같이 국내 사료관리 법에 규정된 단미·보조사료의 부형물질의 지정은 현시점에서 업체들로 하여금 선택의 폭을 대폭 제한함으로써 시장경제원리에도 어긋나는 것은 물론 과학적인 근거도 없이 신제품개발에도 장애를 초래케 하고 있으며, 당초 이법의 제정을 요청했던 일부 업자를 제외한 대다수의 관련업체는 부형물질의 지정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는 반드시 협의 과정을 통해 미래지향적으로 폐지하거나 현실에 부합되게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⑤